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안전 및 보건 규정 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8월 1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148호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안전 및 보건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표이사 및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직원대표”란 「조직 및 정원 규정」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 및 정원 규정」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를 말한다.

제4조(대표이사의 의무)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재단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제5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및 이 규정을 지켜야 하며, 대표이사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재단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9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7조(관리감독자) ① 대표이사는 재단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 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제8조(안전관리자) ① 대표이사는 재단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따른다.

③ 대표이사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건관리자) ① 대표이사는 재단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따른다.

③ 대표이사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대표이사는 재단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까지를 따른다.

③ 대표이사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대표이사 및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조언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12조(산업보건의) ①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재단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따른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대표이사는 재단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재단 취업규칙(「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하는 취업규칙을 말한다)에 준하는 규정(이하 “취업규칙등”이라 한다) 및 제1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4조부터 제39조까지를 따른다.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대표이사는 재단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5조를 따른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대표이사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7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대표이사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대표이사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단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대표이사는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0조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5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20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21조(직원대표의 통지 요청) 직원대표는 대표이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표이사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도급인의 이행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22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대표이사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칙」제37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23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① 대표이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안전보건표지를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를 따른다.

제24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유해·위험작업을 할 때에는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조치)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대표이사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대표이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26조(보건조치)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흠(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27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근로자는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8조(시민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대표이사는 주로 시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시민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1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시민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1조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2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산업재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2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2조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2조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2조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② 대표이사는 제1항제3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3조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 착공을 위해 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0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①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7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 중에 근로자가 사망(교통사고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7조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7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비치) ① 대표이사는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같은 영 같은 조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영 제44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① 대표이사와 근로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이 조 제3항에 따라 보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

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33조(안전보건진단) ① 대표이사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6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직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직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34조(안전보건개선계획) ① 대표이사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대표이사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대표이사의 작업중지) 대표이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중대재해 발생 시 대표이사의 조치) ① 대표이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67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대표이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2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같은 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39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등) ①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재단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급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산업안전보건법」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재단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대표이사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대표이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4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단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1조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대표이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41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대표이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재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재단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3조를 따른다.

제42조(도급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대표이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재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재단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43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대표이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재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대표이사와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1조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대표이사가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이사와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3조의2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②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2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9조·제80조·제82조를 따른다.

제4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3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4조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같은 규칙 같은 조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4조로 정하는 작업

② 대표이사가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5조(건설공사발주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대표이사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를 따른다.

제46조(안전보건조정자) ① 대표이사가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경우로서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 및 제57조를 따른다.

제47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대표이사는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

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48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대표이사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7조를 따른다.

제49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8조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같은 영 같은 조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대표이사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설계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대표이사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요청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8조를 따른다.

제50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대표이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51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9조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여 착공하려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건설공사도급인(대표이사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장 유해·위험 기계 및 물질에 대한 조치

제52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대표이사는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0조로 정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8조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8조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③ 대표이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9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1조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안전검사) ①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로 정하는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제55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① 대표이사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4조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5조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정화·배출하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6조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대표이사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같은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유해·위험물질의 사용 등 금지)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로 정하는 물질을 사용·제조·수입·양도·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제8장 보건관리

제58조(작업환경측정) ① 대표이사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업무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187조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

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직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직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8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대표이사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전단 규칙의 같은 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⑤ 대표이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직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89조 및 제190조를 따른다.

제59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94조의2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장 건강관리

제60조(일반건강진단) ①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96조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

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부터 제199조를 따른다.

제61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0조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대표이사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애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대표이사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5조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제204조 및 제206조를 따른다.

제62조(건강진단에 관한 대표이사의 의무) ① 대표이사는 제60조·제61조의 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직원대표가 요구하면

직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직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 60조·제61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 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대표이사는 제60조·제61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대표이사는 제60조·제61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제131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10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제131조에 따른 임시건강진단의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조치 결과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10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60조·제61조의 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4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대표이사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20조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는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5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대표이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99조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99조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절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대표이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장 보칙

제67조(서류의 보존)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2026. 8. 1. 규정 제1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